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조정실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 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643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및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심사 대상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안 제7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식품 및 의료기기·의약품의 제조기준, 건축물의 설치기준 및 교통수단의 구조·장치기준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로 규정함.

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중요기준 여부 판단 기준(안 제8조의2제2

항)

생명·안전 관련 규제 중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 기준을 규제의 폐지·완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경우,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폐지·완화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및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다.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등(안 제12조의3 신설)

- 1)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규제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정책 환경 변화와 규제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2)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심사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원칙 등(안 제12조의4 신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규제정비 종합계획 및 국정과제의 추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중 국제 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규제정

비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규제 개선 관련 인사상 우대조치 기준 정비(안 제33조제2항제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공포·시행)으로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상위 2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인용규정
을 개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 제7조제1항”을 각각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안전 관련 규제(이하 “생명·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의 폐지·완화”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각각 “법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7조의2)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명·안전 규제의 강화 또는 보완 여부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등)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의 제조기준 등 국민의 식품 소비·섭취상 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2. 감염병 관리기준 및 의료기기·의약품의 제조기준 등 국민의 질병 관리 및 보건·의료상 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3. 건축물·시설물의 설치기준 등 건축·시설물 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4. 교통수단의 구조·장치기준 등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5. 산업재해 예방기준 등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6. 각종 제품의 위해성 또는 안전 기준 등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법률의 목적 규정에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가 포함되는 등 규제내용 변동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요규제”를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 규제가 생명·안전 관련 규제인 경우에는 그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폐지·완화 대상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경우
2.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폐지·완화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경우
4.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5. 기술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6. 폐지·완화의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화”를 “강화, 혹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규제 집행 현황 및 문제점
2. 규제 목적의 달성도

3. 정책 환경 변화와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3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경우 전문연구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의4(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원칙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 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전략적 규제 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2. 법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

3. 그 밖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대상을 고려하여 최대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2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u>	제2장 <u>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u>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 제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법 제7 조제1항</u> 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 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 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③----- <u>법 제7조</u> <u>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u> ----- ----- ----- -----.
④위원회는 <u>법 제7조제1항</u> 의 규 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 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④----- <u>법 제7조제1항 및 제</u> <u>7조의2제1항</u>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 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 ----- ----- ----- -----.
1. <u>법 제7조제3항</u> 에 따른 규제 의 대상 · 범위 · 방법 등의 타	1. <u>법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u> <u>제1항에 따른 생명 · 안전 관</u>

당성에 관한 사항

2. (생략)

<신설>

3. 4. (생략)

② ~ ⑦ (생략)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 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생략)

<신설>

관련 규제(이하 “생명·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의 폐지·완화---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제2항----

-----.

③ ----- 법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제2항----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등)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의 제조기준 등 국민의
식품 소비·섭취상 안전 확보
에 관련된 사항

2. 감염병 관리기준 및 의료기
기·의약품의 제조기준 등 국
민의 질병관리 및 보건·의료
상 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3. 건축물·시설물의 설치기준
등 건축·시설물 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4. 교통수단의 구조·장치기준
등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5. 산업재해 예방기준 등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6. 각종 제품의 위해성 또는 안
전 기준 등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법률의 목적 규정에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 8. (생략)

<신설>

보가 포함되는 등 규제내용변동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생명·안전 규제의 강화 또는 보완 여부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
-----.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규제가 생명·안전 관련 규제인 경우에는 그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폐지·완화 대상 규제를 받는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
상인 경우
2.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폐지·완화 정도가 과도하거
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
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경우
4.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
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
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
는 경우
5. 기술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6. 폐지·완화의 수준 및 정도
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
우

③ -----
---- 제1항 및 제2항-----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규제 신설 또는 강화를 철
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신설>

-----.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 강화, 혹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사후규제영향평가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
가의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
시해야 한다.

1. 규제 집행 현황 및 문제점

2. 규제 목적의 달성도

3. 정책 환경 변화와 규제의 필
요성 및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
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신 설>

②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3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경우 전문연구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의4(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선정 원칙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 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전략적 규제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법 제19조의4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2. 법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

3.그 밖에 주요 국정과제의 추
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
한 대상을 고려하여 최대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법 제19
조의5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 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6. ~ 8. (생략)

③ ~ ⑤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
-----.

----- 5퍼센트 -----

-----.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연 락 처	(044) 200 - 2429